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22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 ① 법 제42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2. 교육감 3. 부시장, 부교육감 4.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본부·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5.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장(교육장) 8.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9. 제5호의 교육기관 및 제6호의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10.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② (생략)	제22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제6호-----제7호----- ----- ----- -----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5조(상임위원회 설치) 법 제 56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8명 이내 4. 산업위원회 8명 이내 5. 건설교통위원회 8명 이내 6. 교육위원회 9명 이내	제25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정수) ----- ----- -----. 1. (현행과 같음) 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7명 이내 4. 산업경제위원회 7명 이내 5. 건설교통위원회 7명 이내 6. 교육위원회 7명 이내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2. 기획행정위원회 가. <u>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기획관실,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나. <u>소방안전본부, 인재개발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u> 다. <u>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 라. <u>(재)인천인재육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	2. 기획행정위원회 가. <u>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기획관실, 규제개혁추진단,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u> 나. <u>소방안전본부 및 관련 소방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u> 다. <u>인재개발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u> 라. <u>(재)인천발전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u> 마. <u>인천국제교류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 바. <u>인천인재육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
3. 문화복지위원회 가. <u>국제경기지원관실,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나. <u>보건환경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u> 다. <u>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	3. 문화복지위원회 가. <u>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u> 나. <u>보건환경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u> 다. <u>인천도시공사 사무 중 관광사업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u>

현행	개정안
라. 인천도시공사 사무 중 관광사업본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사. (재)인천광역시강화고려역사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아. (사)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시설관리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의료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인천문화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사. 인천의료관광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아. 인천여성가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자. 인천강화고려역사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차. (사)인천도서관협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4. 산업위원회 가.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환경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4. 산업경제위원회 가.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환경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u>바. (재)인천테크노파크, (재)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재)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 <u>사.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 <u>아.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유시티(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u>	<u>바.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u> <u>사.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 <u>아. (재)인천테크노파크 사무에 속하는 사항</u> <u>자.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u> <u>차.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u> <u>카. 인천종합에너지(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u> <u>타. 인천유시티(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u>
5. 건설교통위원회 <u>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 <u>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u> <u>다. 종합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u> <u>라. 인천도시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만, 관광사업본부의 사무는 제외한다.</u>	5. 건설교통위원회 <u>가.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u> <u>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u> <u>다. 종합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u> <u>라. 인천도시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만, 관광사업본부의 사무는 제외한다.</u>

현행	개정안
마. 인천교통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6. 교육위원회 가.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교육청 소속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위원 중 교육의원은 선임된 날부터 의원임기 만료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마. 인천교통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6. 교육위원회 가.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재임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임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3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등) 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u>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한다. 이 경우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 <u><신설></u>	제3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u> <u>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u>